

#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91

2014. 6. 30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변화

염철호 연구위원

### |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 · 시행('14.06.05)됨에 따라 과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4.05.23)에서 규정했던 건축설계용역의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이관
-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음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 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이 의무화되고,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설계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라야 함
- 설계공모운영방식의 주요 개선사항은 공모방식 다양화를 위한 제안공모방식 도입, 심사위원 자격강화,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 실명 공개, 제출물 간소화, 공모 보상비용 현실화 등임
-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주요 개선사항은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삭제, 평가항목 배점기준 하향조정으로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폐지 등임

## 1 기존 공공건축 설계발주 제도의 문제점

### ■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이 입찰가격으로 결정

-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의 창의성·예술성 등을 위해 설계공모를 장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발주는 입찰방식을 채용하여 왔음
  - 최근 6년(2007년~2012년)간 공공건축 설계용역 건수 5,439건(수의계약 제외) 중 설계공모는 960건(17.7%)에 불과하며, PQ를 포함한 입찰방식이 80%로 대부분을 차지

건축설계분야 발주방식별 용역 현황

	설계공모	입찰 (PQ 적용)	입찰 (PQ 비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	일괄입찰	기타	계
건수	960 (17.7%)	1,008 (18.5%)	3,140 (57.7%)	16 (0.3%)	14 (0.3%)	46 (0.8%)	5,439 (100%)
금액 (백만원)	1,277,904 (55.4%)	485,627 (21.06%)	286,634 (12.43%)	15,764 (0.69%)	36,788 (1.60%)	24,433 (1.06%)	2,306,168 (100%)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은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의 선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 하에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41개 주에서 건축서비스 관련 발주와 계약은 연방정부의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따른 자격조건기준 선정절차(QBS: Qualifications-Based Selection)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과 자격조건을 통해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고 가격은 추후 협상으로 결정
  - 일본의 경우, 건축심의회 회답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1991년)에서 설계자의 선정은 물품구입 등과 같이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1994년 내각회의 통과)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면서 경쟁적인 조달방식으로서 공사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채용하고, 설계·컨설팅업무에서는 공모형 방식을 채용할 것을 규정

### ■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과 한계

- 설계안 평가 위주의 설계공모방식의 한계
  - 사업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나 설계공모방식은 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용
  - 공모기간 소요, 공모비용 부담, 절차의 복잡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기피하거나, 설계안을 선정하는 발주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계약 이후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대 등의 문제점 다발

-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 전문성 논란과 설계자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문제
  - 발주처 직원의 과반수이상 심사위원 참여, 계획 및 설계 이외 전문가의 동일한 평가 비중 등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 심사위원 명단, 심사채점표, 심사과정 등의 비공개에 따른 심사의 투명성 의심
  - 도판, 조감도, CG, 모형 등 과도한 제출물 요구, 입상작에 대한 비현실적인 공모참여 보상비용 등으로 설계자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문제점과 한계

- 건축설계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 부재
  - 입찰방식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축분야와 토목 등 타 기술용역의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왔음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건축설계 용역 및 업체의 특성이 평가항목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일부 대규모 업체에만 유리한 과도한 배점기준
  - 여러 사례에서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배점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만점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업체나 신진의 입찰참여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 사례

	만점기준	5건 이상	7건 이상	8건 이상	10건 이상	13건 이상	15건 이상
실적건수	비율	9.4%	1.4%	1.4%	14.4%	9.4%	18.7%
	만점기준	20건 이상	25건 이상	30건 이상	35건 이상	40건 이상	45건 이상
	비율	20.1%	14.4%	9.4%	3.6%	2.1%	1.4%

- 설계공모와 유사한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 용역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제안서 평가를 반도록 하여 왔으나, 평가기준으로 설계공모 평가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설계공모안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계안 중심의 기술제안서를 작성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4.6.5.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 제도의 개편

### ■ 일정 규모 이상 및 용도 해당 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현재 2.3억)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

\*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예정설계비 규모와 관계없이 설계공모를 의무 적용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포함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1만 해당됨

법	시행령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li> <li>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li> </ol> </li> </ul>

-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설계공모 비적용 절차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 ■ 공공건축 설계발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

-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새로이 규정
  -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새로이 전면 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14.05.23. 시행)에서는 건설기술의 범위에서 공공건축 설계용역을 제외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 ② 공공기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설계공모 및 입찰(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이외의 설계발주방식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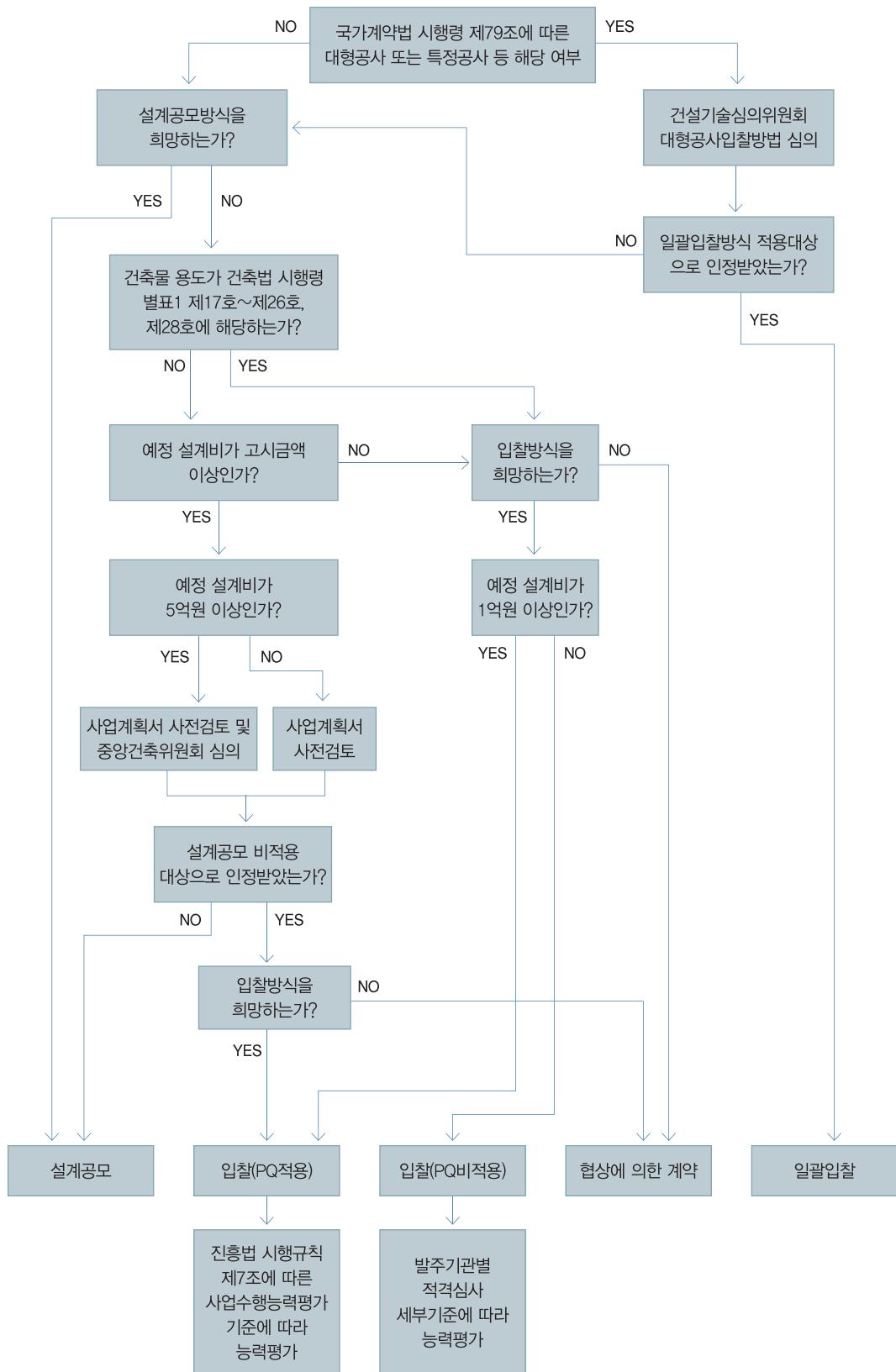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름
  - 다만 해당 건축물이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 용도이면서 예정 설계비가 고시금액이 상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선정 등에 따른 설계·시공 통합 발주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건축물 용도 및 예정 설계비 규모별 발주방식**

건축물 용도	예정 설계비	발주 방식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절차
		설계 공모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16호, 제27호	1억 미만	○	○	○	-
	1억 이상 고시금액 미만		○(PQ)		
	고시금액 이상 5억 미만	●	×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5억 이상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제26호, 제28호	1억 미만	○	○	○	-
	1억 이상		○(PQ)		

● : 의무적용, ○ : 선택적용, × : 적용불가,

○(PQ)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



설계자 선정방식의 결정 절차

### 3 설계공모방식 주요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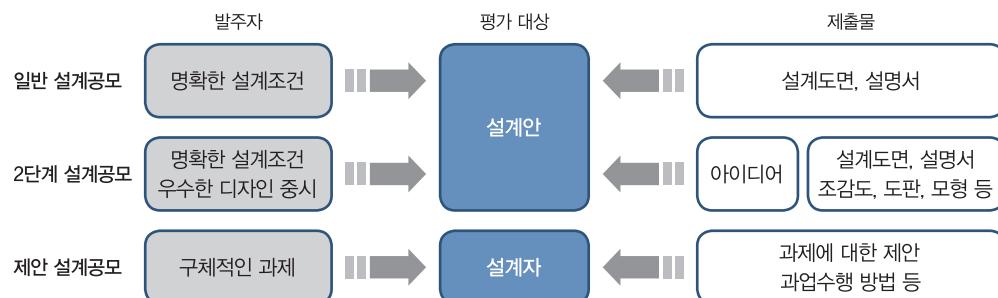
#### ■ 설계발주방식 다양화

- 설계공모운영지침을 총칙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각 공모방식별 운영방법으로 재편하고, 공모방식별로 적용대상, 평가기준, 공모기간, 제출도서 등을 차별화

-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 대상 :**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제안공모의 적용 대상 :**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방식으로서 ‘제안공모방식’ 도입

- 평가기준 :** 경력, 실적 등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30점),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등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 제안요청 과제 :**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응모자는 문장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 일반 설계공모와의 차이 :** 단기간의 공모기간(15일 이상), 제출도서 간소화(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금지), 공모보상 비용은 소정의 상금으로 지급



#### ■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심사위원회는 설계안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사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임·직원 심사참여를 전체 위원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규정 마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 할 수 있다.

## ■ 설계공모 참여자의 부담 경감

-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감도나 모형 등은 제출을 금지하여 비용발생 최소화

\*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공모 제출물로 조감도, 모형, 도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은 입상작에 대한 보상 비용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부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제출도서 등)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회가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타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정 설계비의 10%(최대 1억)를 공모 입상작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설계공모 보상 비용을 현실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주요 개선사항

### ■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 용역비 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은 설계자(담당 건축사) 위주로 평가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은 설계업체 위주로 평가
 

\*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대평가방식 적용 가능

## 설계용역비 규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담당 건축사	경력	20	담당 건축사	경력	18
	실적	15		실적	12
참여 건축사(보)	경력	15	참여 건축사(보)	경력	12
	실적	10		실적	8
<b>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b>		20	<b>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b>		20
신용도 (입찰참가제한/벌점)		10	신용도 (입찰참가제한/벌점/ <u>신용등급</u> )		10
업무중복도		10	업무중복도		10
-		-	<u>보유건축사(보) 현황</u>		10

## ■ 건축설계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신용등급 평가는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 규정
-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명시하고, 경력(12년 이상 만점), 실적(최근 10년간 설계실적 10건 이상 만점), 유사용역 실적(최근 5년 이내 5건 이상 만점) 등 만점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 용역 및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2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자율성 보장

\*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은 건축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필요

- 과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활용되었던 기술자 평가방식,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은 폐지

\* 이를 대신하여 설계공모방식에 과업수행능력과 제안서를 평가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방식을 신설

## 5 향후 과제

### ■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 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삭감하는 문제 개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간주(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2차)하고 있어 발주기관에 따라서는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80% 정도까지 삭감함으로써 설계 대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시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계약법 또한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는 조항 추가 등 개정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 안전행정부의 ‘설계공모운영요령’과의 연계 또는 통합

- 현재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설계공모운영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개편된 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설계공모운영요령’을 참고하여 상당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두 기준 간에 크게 상충하는 조항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두 기준을 일원화하거나 일부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적격심사방식에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 확대

- 현재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 기준에 준하여 각 발주기관별로 입찰 시 적격심사세부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 가격평가 점수에 비해 능력평가 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설계자 선정이 대부분 가격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 토목, 도시계획 등 타 기술용역에 비해 용역비 규모가 작은 건축설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격심사방식에서 가격평가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능력평가 점수의 비중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용역 금액별 적격심사방식

구분	국토교통부		조달청		지자체	
	능력	가격	능력	가격	능력	가격
~1억 원	30%	70%	10% *	90%	10% *	90%
~2억 원						
~고시금액						
~3억 원	50%	50%	30%	70%	30%	70%
~5억 원				50%		
~10억 원			50%	50%	50%	50%
~30억 원	70%	30%	70%	30%	70%	30%
30억 원~	80%	20%				

\*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 평가

염철호 연구위원 (031-478-9677, chyoum@auri.re.kr)

